

고시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2037 시정공보 고시 제 호	(전화번호 419. 460)	전결규정 주 장	조 항 전결사항
처리기한		기안자	결재자	
시행일자	1969. 6. 11	경희 황호광	시장	결재 1969. 6. 11 시장실
보존년한				
보조 기관	제 1 부 시장 경관국장 경무국장 기획계장		경관 5/호	
협조	(외선결재) 경무국장	시정공보	시정공보	
경수 참조	유신 각안 참조	통 검열 1969. 6. 11 시정공보 부처장	발 송	정 서
제 목	도쿄 교통법에 의한 제한 지시에 관한 고시			
(제 1 단)				
우 신 : 내부결재				
세 목 : 등 건				
명들, 총무로 1. 2 가에 불법주차 행위를 근절 하신 도리상의 안전소중을 위하여 벌칙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고시 제 제정 고지 - 람 - 다 부침 고시 안 14 골				

확법
인무
1969. 6. 11
공

공상서식 1-2-1 (갑)
1967. 4. 4. 승인

657

(18절지) (2급인쇄용지 74g/m²)
(조탈정) (300,000매 인쇄)

118

211

제2안

경우 139-

주신 우신취참근

제목 등 건

명등. 총무를 1.2가에 불법 주차 행위를 근절하기
도출생의 안전수준을 위하여 별첨과 같이 제26 개정기 보인
"공보. 차량 잡는다

첨부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부 붙

우신취: 가2 나2-11 제1-29 (제2단통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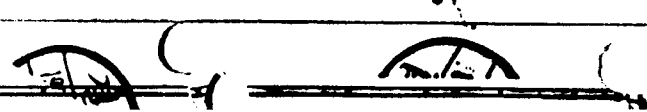
제3안

경우 139-

주신 공보선장

도출생의 안전수준에 의한 제한리시에 관한 고시를 별첨과
같이 제26 개정기 등보라오시 시보에 게재 하여 주시
바랍니다.

첨부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부 붙



서울특별시 (Seoul Special City) and a circular stamp with '1969' and '서울특별시' (Seoul Special City).

도로교통법에 의한 제한지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서울특별시 장
 서기 1969년 월 일

도로교통법에 의한 제한지시에 관한 고시

법무심사
 법무과장
 서기
 제
 심사자 자

서울특별시 고시 제 709호 (62.8.25) 10항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.

11. 제차의 통행금지구역 설정

명동 충무로 1.2가 원대 (충무로입구, 명동입구 및 삼일로, 퇴계로, 을지로, 남대문로, 이서 진입하는 도로)는 제차의 통행을 금지한다.

다만 남대문로 (전매청 감사원 측면 통로) 및 을지로 (감사원 후면)에서 진입하여 메트로 호텔 앞 ~ 내무부 후문 ~ Y.W.C.A. ~ 삼일로에 이르는 일방통행만은 제외한다

12. 실시기일 : 이고시는 69.6.10. 부터 시행한다.